

「군포도시공사 안전보건관리」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를
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



2021년 10월 13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58호

군포도시공사 안전보건관리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군포도시공사 안전보건관리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0조의2(근로자의 작업 중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공사 내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.
- ②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(이하 “관리감독자 등”이라 한다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관리감독자 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미래기획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미래기획부장 이 현 동
	직 위 성 명	안전감사팀장 이 영 남
	담당 성명 (전화번호)	박 병 진 (390-7646)

신.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50조의2 <신설>	<p>제50조의2(근로자의 작업중지)</p> <p>①공사 내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(이하 “관리감독자 등”이라 한다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관리감독자 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.</p>	

관련법령[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]

□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

- 제52조(근로자의 작업중지)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(이하 “관리감독자 등”이라 한다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.